

■ 법률 칼럼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1. 601 A 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현 이민법 아래에서는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 등으로 밀입국을 하신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시민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밀입국에 대해 불법성을 면제(601A)를 받아야 하고, 면제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또 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90년 초에 개정된 현행 이민법은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게 되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승인 요건

- 1) 이미 승인이 난 이민 청원서(Petition)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3) 601A 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미군 가족인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인 경우)

불법입국자라 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을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

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밀입국한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서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 주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밀입국자들 중에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245 (j) 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2001년 4월 30일 전에 이민청원 (Labor Certification 포함)이 접수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그 청원이 승인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족, 고용인 등이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 경우에는 밀입국을 하셔도 벌금 1,000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당뇨와 족부 건강
당뇨에 의한 합병증

당뇨로 인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족부 합병증은 (말초)신경병증으로 발에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되거나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발이 뜨겁다", "개미가 기어다닌다", "화끈거린다"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또한 발의 감각이 무뎌져서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찔림 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증상이다. 대부분의 당뇨발레양의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에 난 조그만 상처가 염증으로 번지고, 궤양이 되고, 감염이 되고 뼈까지 감염되어 발을 절단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이다.

당뇨병은 약 4억 2,5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질병이다. 이 수치는 2045년까지 6억 2,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당뇨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질병의 급속한 증가는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의 주요 과제이다. 족부궤양 사례는 종종 치료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해야 하는 감염 및 허혈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고 종종 하지 절단을 초래하며 더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대부분의 하지 및 족부 절단은 위에서 언급한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한 환자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족부 의사는 당뇨병 환자를 진료할 때 혈관 검사, 피부 검사, 근골격계 검사와 함께 반드시 신경 검사를 시행한다. 신경 검사에는 다양한 세부 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동 감각과 고유 감각의 테스트를 시행한다. 특히 진동 감각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의 감퇴나 유무를 나타내기에 중요한 테스트 중 하나이다.

당뇨로 인한 하지 및 족부 절단과 5년

사망률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당뇨로 인한 발의 합병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사르코 관절병증(주로 당뇨로 인해 족부의 관절들이 무너져 내리는 질병), 하지 절단의 데이터를 평가한 다음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와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가 보고한 암 사망률과 비교되었다. 사르코 관절병증, 족부궤양, 경미한 족부 절단 및 주요 족부 절단에 대한 5년 사망률은 각각 29.0, 30.5, 46.2 및 56.6%였다. 이는 유방암이 9.0%, 폐암이 80.0%인 것과 비교된다. 보고된 모든 암의 5년 통합 사망률은 31.0%였다. 웬만한 암보다 족부궤양 및 족부 절단에 의한 5년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치료에 대한 직접 비용은 2017년에 2,370억 달러였다. 이는 2015년 암 치료에 대한 800억 달러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당뇨병 치료에 대한 직접 비용의 최대 3분의 1 정도가 하지와 족부 치료 비용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당뇨병성 하지 합병증은 여전히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특히, 족부 궤양과 하지 및 족부의 절단은 건강이 좋지 않은 지표 이상으로 조기 사망과 관련된 독립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앓는 환자도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우선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당뇨병을 진단 받았다면 가까운 족부의를 만나서 합병증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장원호 발전문 병원
Ryan Chang, DPM
(949) 484-4405
62 Corporate Park #235
Irvine, CA 92606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교통사고, 각종상해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교통사고/각종상해 Slip & Fall/Dog Bite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